

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3서식] <신설 2023. 7. 20.>

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폐기신고자 (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)	상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사업장 소재지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폐기일	
폐기신고 대상 농업기계	기종명	형식명(모델명)	
	규격	제 조번호	
	검정번호	제 조연월일	
	최초농업기계 제작사	출고일자	수입일자
부착 원동기	형식명	원동기코드	
	규격(최대출력) kW	제 조번호	제 조사
폐기의뢰자 (최종소유자)	성명(상호 및 대표자)		
	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		
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전화번호	
폐기결과	폐기물 중량(kg)	재활용 부품 내역	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합니다) 1.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2. 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3. 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4. 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(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합니다)
------	---